

**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**

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4월 16일

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

< 2021년도 보건의료 R&D 추진방향 >

◇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&D 투자를 '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
- 기초연구·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

2021년도 전략목표

공익적 R&D 투자 강화로 국민의 보건의료문제 해결,
첨단유망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 주력산업으로의 도약

4대 전략별

중점 추진방향

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	① 감염병 상시화에 대비한 예방·진단·치료기술 등 투자 강화
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	② 재생의료 제도 완비 및 중점 지원 ③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D.NA 기술 연계·활용 투자 ④ 신약·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
공익적 R&D 투자 강화	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R&D 확대 ⑥ 치매·만성질환 등 고부담·난치성 질환 극복 중점 투자
의료현장 연계 R&D 지원	⑦ 병원 인프라를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

I. 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세부 사업명	공고단위 (RFP명)	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 대상	과제 구성 요건	선정 예정 과제 수 (이내)
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	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상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	기허가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	임상 2상 4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00백만원)	3년 이내 (1차년도 6개월)	· 총괄연구 개발기관은 제약기업에 한함 - 세부과제 연구개발 기관은 산 학 연 병 모두 가능	단독 ¹⁾ 또는 총괄과제 ²⁾	2
			임상 3상 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50백만원)	4년 이내 (1차년도 6개월)			2
		새로운 조상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	임상 2상 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50백만원)	3년 이내 (1차년도 6개월)			2
			임상 3상 7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50백만원)	4년 이내 (1차년도 6개월)			1

1) 단독과제는 1개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

2) 총괄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

II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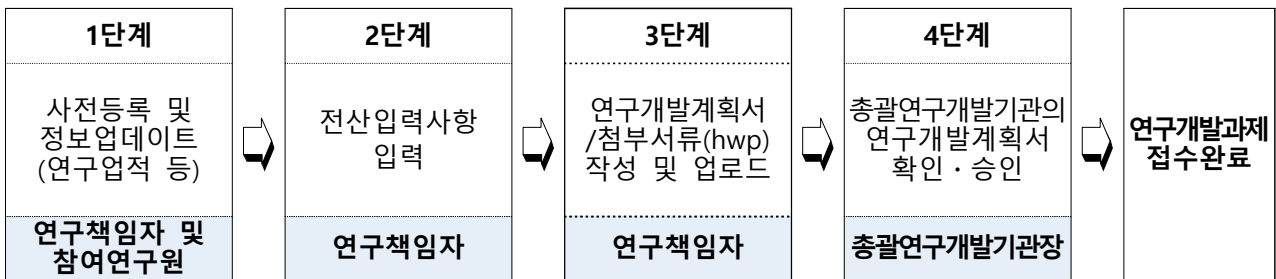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
※ 연구자(연구개발기관)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
- 총괄연구개발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
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총괄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□ 서류제출기한

공고단위 (RFP)	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시	총괄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시
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사업	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	2021. 5. 17(월) 18 : 00	2021. 5. 18(화) 18 : 00

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 마감시간(18:00) 엄수 (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)

※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'에 공지함

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등
- 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

V. 기 타

□ 참여기업 부담금 (세부과제별 산정)

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○ 참여기업(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부담기준

항목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3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
-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 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- 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 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2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'를 작성·첨부하여 '과제평가단'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'국가연구시설·장비 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※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, 대상과제는 RFP에 표기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(www.mohw.go.kr)
- 전문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

☞ 문의사항은 **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질의응답(Q&A)**으로 **질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한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공고단위 (RFP명)	사업(RFP) 내용		평가일정/절차 안내	
	담당자	연락처	담당자	연락처
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	건강증진R&D팀 정아랑	043-713-8097	R&D평가혁신팀 심훈섭	043-713-8179